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5,886,870	11,576,606
일반회계	358,453,183	10,753,595
특별회계	27,433,687	823,011
기타특별회계	27,433,687	823,011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240,577	67,217
섬진강댐특별회계	6,850,000	205,5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976,000	29,28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4,457,851	133,7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1,553	13,847
기반시설특별회계	83,447	2,50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334,161	340,0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0,098	30,903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00,365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